



프랑스에서의 확성기 소음규제

정보신청기관 :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

I. 들어가며

프랑스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소음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스포츠 및 여가활동 소음 - 제트스키, 고카트 경주, 모토크로스 경기, 발트랩 사격 등
- 일반인에 개방된 시설 소음 - 술집, 식당, 디스코텍, 다목적 시설 등
- 이웃 소음 - 주민의 행동, 고함소리, 가내 목공작업 및 정원 손질
- 공사장 소음

- 지상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소음 그리고 항공소음
- 공공도로에서의 확성기 소음 등이다.

이 가운데, 공공도로 및 공공장소에서의 확성기 이용을 총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전국적인 수준의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유사 법률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확성기 이용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II).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해당 부처의 내부 회람(Circulaire)¹⁾을 통해 각 자치단체의 장(도지사



- 1) • 1960년 공공도로에서 확성기 이용에 관한 내무부 회람(Circulair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n° 244 du 13 mai 1960 relative à l'utilisation de hauts-parleurs sur la voie publique) : 시장이 예외를 허용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공공도로에서의 확성기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확성기의 수와 송출시간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 1965년 공공도로에서 확성기 이용에 관한 내무부 회람(Circulair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n° 308 du 22 mai 1965 relative à l'utilisation de hauts-parleurs sur la voie publique) : (확성기 이용)을 허가할 경우, 시 당국과 경찰당국은 소음의 정도가 공공의 안녕을 비정상적으로 해치는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 1992년 공공도로에서 확성기 이용에 관한 내무부 회람(Circulair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n° 290 du 20 octobre 1992 relative à l'utilisation de hauts-parleurs sur la voie publique)은 1962년 회람과 1965년 회람의 효력을 인정하고, 공공도로에서의 확성기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권한을 시장에게 한정하였다. 동 회람에 따르면, 시장은 확성기 이용이 초래할 수 있는 공해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이용은 최소한으로(avec parcimonie) 허용되어야 한다.

(Préfet) 또는 시장(Maire))에게 확성기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범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판례²⁾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즉, 확성기 이용에 대한 규제책임은 각 자치단체장에게 있다(III).

II. 확성기 이용에 적용 가능한 전국적 수준의 규제

확성기 이용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에는 지방자치법, 공중위생법, 형법³⁾ 그리고 1992년 소음방지법⁴⁾과 1995년 여가활동시 소음을 야기하는 물건에 관한 명령⁵⁾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확성기’ 또는 ‘확성장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확성기’와 ‘확성장치’를 구분하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확성장치’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의 유형 중 하나인 이웃소음에 적용되는 법률은 확성장치 이용에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

이웃소음(Bruit de voisinage)이란 공공장소

및 사유공간에서 소음의 기간·반복·강도에 따라 인간의 건강 또는 이웃의 안녕을 침해하는 성격을 갖는 이웃에서 유발된 소음을 일컫는다. 이웃소음의 유형으로서 이웃의 행동, 비지정 경제활동, 스포츠·여가·문화 활동 및 작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있다.

1. 지방자치법(Code général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시장에 의한 일반적인 경찰권의 행사가 허용되며, 따라서 시장은 일반인에게 접근이 허가된 장소에서 발생한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특권은 지방자치법 제L.2212-2조에 근거한다.

• 지방자치법 제L.2212-2조

도시경찰은 공공질서·공공안녕·공공치안·공중위생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거리에서 선동을 동반하는 난투극과 언쟁,



2) 프랑스 국사원(Conseil d'Etat)은 “시장은 자신의 코뮌(Commune) 내에서 주민의 휴식과 안녕을 침해하는 지나친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도(道)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확성기 이용에서 과생된 소음공해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장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였다(Conseil d'Etat, 25 septembre 1987, Commune de Lege-Cap-Ferret, n°68501).

3) 형법(Code pénal) 제R610-5조: 경찰 명령(Décret과 Arrêté)에 규정된 금지의 위반 및 의무의 불이행은 제1등급 경범죄(Contravention de la première classe)상의 벌금에 처한다.

4)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5) Décret n° 95-79 du 23 janvier 1995 relatif aux objets bruyants susceptibles d'être utilisés dans des activités de loisirs.

공공집회장소에서 유발된 소란·소요·소음, 근린폐해, 주민의 휴식을 방해하는 심야회합 그리고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성격의 모든 행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침해의 제거

3. 전시장, 시장, 공공의식 및 공공축제, 공연장, 놀이장, 카페, 교회 그리고 이외의 공공장소와 같이, 군중의 회합이 잦은 장소에서의 질서 유지; (...)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경찰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등급 경범죄 위반으로 38 유로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공중위생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공중위생법 제L1311-1조 그리고 제L1311-2조는 시장에게 특별한 경찰권 행사를 허용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는 달리, 공중위생법은 일반인에게 접근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 제L1311-1조

특별입법과 지방 기관에 인정된 권한의 적용을 해함이 없이, 공중위생심의회(Haut Conseil de la santé publique),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직업상의 위험방지 최고심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 prévention des risques professionnels)와의 협의를 거쳐, 국사원의 명령은(이하에서 열거하는 바와 같이) 위생 전반에 관한 규칙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정한다.

- 전염병 예방
- 주거지·주거밀집지역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활장소의 위생
- 인간에 의한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의 공급
- 환경보호를 위해 지정된 시설에 관한 법규에 따르지 않는 활동
- 하수·쓰레기의 배출, 취급, 배설 그리고 이용;
- 이웃소음과 가정에서 기인한 대기오염의 방지
- 식료품의 가공·분배·운송·보존

• 제L1311-2조

제L1311-1조에 규정된 명령은 데빠르뜨명(Département, 道) 또는 꼬뮌(Commune)의 공중위생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도지사의 명령 또는 시장의 명령으로 마련된 특별 규정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

Ⅲ. 확성기 이용에 대한 지역적 수준의 규제

내무부 회람에 따라 공공도로 및 공공장소에서 확성기 이용은 도령(道令, Arrêté préfectoral) 또는 시령(市令, Arrêté municipal)에 의하여 규제된다. 도령과 시령은 공공도로 및 공공장소에서의 확성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⁶⁾ 단, 상업목적의 행사 및 민간·공공 축제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시장이 확성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방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이웃소음에 관한 PAYS-DE-LA-LOIRE와 LOIRE-ATLANTIQUE 법령⁷⁾

- 일반인에게 접근이 허용된 공공장소 -

• 제2조

공공도로 · 일반인에게 접근이 허용된 민간도로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소음의 강도 · 지속기간 · 요란한 또는 반복적인 성격에 따라, 그리고 소음의 발신지에 상관없이, 불쾌한 소음은 금지된다.

- 모든 유형의 고함과 노랫소리, 음성 및 음악 송출, 기계 및 확장장치의 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랑악사 그리고 개인 및 법인이 공공장소에서 음성경보장비 및 확성기에 의한 송출장비를 이용하고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가게 그리고 상점가 내부의 확장장치는, 접근이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일반인에게 야기되는 소음수준이 65dB(A)⁸⁾를 초과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리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 제3조

사회적 · 스포츠 · 문화적 또는 그 이외의 이익

을 표현하기 위한 행사 그리고 도시 및 도시의 일정 구역의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장이 특별히 허가를 부여한다.

시장은 각 행사마다 이웃에 대한 소음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히 해당 행사가 야외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시간대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행사가 다수의 도시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허가를 부여한다.

2. 이웃소음 규제에 관한 Somme 법령⁹⁾

• 제 4.1조 - 확장장치

치안업무에 필요한 확장장치를 제외한 확장장치의 사용은, 확장장치가 - 동 장치가 이동 가능한 것인지 또는 고정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 일반 청중에게 사용되지 않는 한 공공도로에서 금지된다.

문화적 · 상업적 · 스포츠 행사, 축제 또는 특정 직업군의 훈련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시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공도로에서의 확성기의 사용 · 음악의 증폭 · 폭죽 및 기타 조명탄의 사용을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월 1일, 6월 21일 음악축제(Fête de la Musi-



6) 법령(Arrêté préfectoral)은 원칙적으로 공공도로에서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단, 원칙에 대한 이러한 예외는 일반이익에 대한 침해가 예외를 허용하는 이익에 대하여 지나치지 않는 경우에만 적법하다. 그리고 주민의 안녕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되는 예외는 불법으로 간주된다(Tribunal administratif de Pau, 2 octobre 1975, Rec. CE 760).

7) Arrêté préfectoral du 30 avril 2002 relatif aux bruits de voisinage, Le préfet de la région de la Pays-de-la-Loire et préfet de la Loire-Atlantique.

8) Decibel의 약자.

9) Arrêté préfectoral du 20 juin 2005 portant réglementation des bruits de voisinage dans le département de la Somme.

que), 7월 14일 대혁명 기념일과 도시 기념일의 경우에는, 확성장치의 사용이 항상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파리 소음활동 규제명령(Arrêté)¹⁰⁾

• 제5조

상업적·축제·스포츠·문화 및 관광적 성격의 공공행사가 확성장치를 필요로 할 시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동 행사가 수일 동안 한 지역에 고정될 경우, 주최자는 1998년 명령(Décret n° 98-1143 du 15 décembre 1998)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영향평가 연구를 파리 경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음 진원지와 주거용 및 사람의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건물과의 거리를 명시한 건물 배치도
- 개별적인 확성장치의 기술 설명서
- 가장 근접한 환경에 대한 소리영향 평가와 같이, 평균 소리수준과 최고 수준을 명기한 전문 음향전문가의 증명서

동 행사가 이동 형태일 경우, 주최자는, 개별적인 소음의 진원지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하였을 때, 소음이 81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성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이웃소음 방지에 관한 Taverny 시령¹¹⁾

• 제8조 - 공공도로에서의 소음과 확성장치
(...) 확성장치의 사용은 10시 이전, 12시와 14시 사이 그리고 19시 이후에는 금지된다.

- 도로교통 전용도로: 확성장치의 소음수준은 60dB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보행자 전용도로: 확성장치의 소음수준은 65dB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축제 및 행사: 6월 21일 음악축제(Fête de la Musique), 지역축제, 7월 14일 대혁명 기념일과 1월 1일에는 동 명령(Arrêté municipal)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상업적 행사 및 공공 축제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 행정기관이 확성장치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 Sajoun 소음방지 상설 규칙¹²⁾

• 제6조 -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공장소 및 사유지와 공공도로에서의 확성장치 및 소음 소음의 강도·기간·정보제공 성격·공격적 및 반복적 성격에 따른 불쾌한 소음은 소음의 진원지를 불문하고, 공공장소 및 일반인에게 개방된 모든 장소에서 금지된다. 불쾌한 소음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10) Arrêté n° 01-16855 du 29 octobre 2001 réglementant à Paris les activités bruyantes.

11) Arrêté municipal n° 2004-017 du 26 janvier 2004 à Taverny sur la lutte contre les bruits de voisinage.

12) Règlementation permanente de la lutte contre le bruit, Le Maire de la Ville de Saujon et Conseiller Général, Arrêté permanente PMP 2008/07/14.

- 1) 전자음향 음악장비(증폭기가 설치된 장비), 소리확산(Appareils de diffusion sonore) 장비, 초인종, 경적, 호각 및 이와 유사한 장비를 이용한 음성송출 또는 음악송출과 같은 모든 유형의 고함과 노랫소리. 그러나 이러한 장비의 사용은, 특히 거리의 오르간 연주자 및 거리의 악사 그리고 음악을 이용하는 상인과 같이 소규모의 전통적인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볼륨이 확산장비에서 매우 근접한 지역에 한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용인된다.
- 2) 라디오 수신장비, 텔레비전 송신장비, 녹음 장비, 전축, 하이파이 스테레오, 휴대용 라디오·카세트, MP3, 음성재생장치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장비의 사용은, 이러한 장비가 청중에게 국한되어 이용되지 않거나 공공의 안녕 및 휴식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
- 3) 모터의 수리 및 제어와 관련하여, 그 강도와는 상관없이 소음을 야기하는 전문적 또는 특정 작업. 그러나, 운행 중 우발적인 손상으로 인해 정지한 차량의 재운행을 위해 필요한 단기 수리는 허용된다.
- 4) 폭죽, 총기, 기타 화기 및 유사소음을 유발하는 물체 및 장비의 발사. 단 7월 14일 대혁명 기념일과 8월 15일 몽소 승천절에는 폭죽의 발사가 허용된다.
- 5) 자정 이후, 시장 및 노점상에서 나오는 음악

스포츠·문화 및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주거지 내 또는 주거지 부근에 위치한 시설의 건립·확장 및 변경은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진술하여야 한다.(…)

IV. 맺으며

앞에서 언급된 1960년, 1965년 그리고 1992년 내무부 회람은 확성기를 포함한 확성장치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각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지만 기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별로 확성장치 사용은 차이가 있다. 아울러, 도령 및 시령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매우 낮기 때문에 종종 명령(Arrêté)의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벌금의 부과와 함께, 시장이 직접 확성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당사자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소법원(Tribunal d'instance)에 중재자를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잦다.

정 영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